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05. 10. 5. 2004 당 2365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심결의 경위

가. 피고는 별지 제 1 기재의 의자 등받이용 커버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권리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별지 제 2 기재의 비교대상디자인 등과 유사하여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 728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 조 제 1 항 제 3 호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물품은 커버 하단의 폭이 상단의 폭보다 넓고, 좌·우측에서 중앙 쪽으로 일정한 길이만큼 상단부분이 하단부분보다 돌출되어 있으며, 중앙에서 아래쪽으로 일정한 길이만큼 꼬리와 같은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 의장법 제 5 조 제 1 항 제 3 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심결을 하였다.

【증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의자 등받이용 커버는 예전부터 다양한 종류가 있어 왔던 물품으로 변형의 폭이 좁아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부채꼴 형상의 유연한 타원형의 등받이용 커버 중앙부에 자 형태의 뚜렷한 돌기선이 형성되고, 하단 중앙부의 손잡이 형상으로 약간 볼록하게 돌출된 돌기부에 6 개의 돌기면과 5 개의 돌기골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등받이용 커버 아래쪽에 돌출부와 일체로 되어 있는 꼬리부가 좌판을 감싸면서 내려져 있는 반면에, 비교대상디자인은 사다리꼴 형상의 등받이용 커버 중앙부에 자 형태의 희미한 돌기선이 형성되고, 하단 중앙부의 I 자형 돌기부 중 2 개는 뚜렷하나 나머지는 희미하며, 등받이용

커버에 꼬리부가 일체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으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다르다.


나. 판단

(1)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한편,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 후 129 판결](#) 참조).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물품은 모두 의자 등받이용 커버로서 의자 등받이의 후방 전면을 덮도록 조립하여 마감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그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하고, 양 디자인의 물품은 사용시 및 거래시 그 정면부의 형상 및 모양이 일반 수요자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디자인의 미감적 특징을 나타내는 가장 주된 요부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물품의 형상과 모양을 살펴보면, 1 의자 등받이용 커버의 구조적 특징이 되는 기본 형태 구성에 있어서 상단의 폭보다 하단의 폭이 조금 더 넓고, 커버 중앙에 좌·우 측단에서 중앙쪽으로 일정한 길이만큼 상단부분이 하단부분보다 돌출되어 있으며 그 돌출된 경계선을 따라 와 같이 단차가 형성된 형상과 모양인 점, 2 커버 중앙부에서 아래쪽으로 일정한 폭과 길이만큼 튀어나온 돌출부가 있고 그 돌출부에 일정 수의 돌기면과 돌기골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유사하며, 한편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커버 돌출부 아랫부분에 일체로 형성된 꼬리부가 좌판에 결합되어 있는 형상과 모양임에 반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커버 아래 돌출부와 일체로 형성되는 꼬리부가 없고 별도의 연결부에 의해 등받이 커버와 좌판이 결합되어 있는 형상과 모양인 점, 4 이 사건 등록디자인 물품의 돌출부에 자형 골이 5 개인 반면에 비교대상디자인은 4 개인 점 및 그 돌출부의 돌출정도 등에서 다소 상이하다.

이러한 양 디자인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전부터 다양한 종류의 의자 등받이용 커버가 사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의자 등받이용 커버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나 비교대상디자인과 같은 형태 외에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어서(경험칙)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반드시 좁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3 의 차이점에서 꼬리부가 커버 돌출부 아랫부분에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 그 자체는 의자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으로 양 디자인의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4 의 차이점은 의자 등받이용 커버의 전체적인 기본 형태 구성에 있어서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고 쉽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바, 양 디자인은 유사점 1, 2 와 같이 그 주된 요부에 해당하는 정면(물품 표면)의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구 의장법 제 5 조 제 1 항 제 3 호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